

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

제정	1996. 3. 1	조례 제 2호
개정	1998. 10. 8	조례 제 145호
	2003. 8. 29	규칙 제 344호(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)
	2006. 10. 13	규칙 제 830호(지방공무원 정원조례)
	2007. 7. 1	조례 제 883호(지방공무원 정원 조례)
	2008. 5. 9	조례 제 943호(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)
	2008. 12. 29	조례 제 96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	2010. 8. 2	조례 제109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2. 5. 9	조례 제1227호
일부개정	2022. 1. 6	조례 제225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. 6>

[전문개정 2012. 5. 9]

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용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 <개정 2022. 1. 6>

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2. 1. 6>

[전문개정 2012. 5. 9]

제3조(사무국장)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2. 5. 9]

제4조(전문위원)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
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

여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<개정 2022. 1. 6>

[본조신설 2012. 5. 9]

제5조(사무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로 정하며, 그 직급별 정원은 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06. 10. 13, 2007. 7. 1, 2008. 12. 29, 2010. 8. 2>

[중전 제3조에서 이동 <2012. 5. 9>]

제6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, 파견, 전보 등 임용 절차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을 적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6]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<2022. 1. 6>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8 조례 제14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8. 29 규칙 제344호,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0. 13 규칙 제830호, 지방공무원 정원조례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8명”을 “19명”으로 한다.

부칙 <2007. 7. 1 조례 제883호,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9명”을 “22명”으로 한다.

부칙 <2008. 5. 9 조례 제943호,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③ 생략

④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⑤ 생략

부칙 <2008. 12. 29 조례 제96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22명”을 “23명”으로 하고, “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」”을 “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생략

부칙 <2010. 8. 2 조례 제109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행정서기관”을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23명으로 하며”를 “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로 정하며”로 한다.

부칙 <2012. 5. 9 조례 제12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. 6 조례 제2257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